

2014년도 수탁·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계획 공고

중소기업청에서는 대·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간 공정한 수탁·위탁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(이하 '상생법')」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수탁·위탁 거래 우수기업을 선정하고자 「2014년도 수탁·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4년 8월 13일
중소기업청장

1 우수기업 선정 개요

□ 목 적

- 현금결제 확대 등 공정한 수탁·위탁거래 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된 기업을 '수탁·위탁거래 우수기업'으로 선정·지원하여 공정거래 문화 확산

* 근거 :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3항¹⁾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2²⁾

-
- 1) 상생법 제27조(수탁·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)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현금결제 확대 등 결제조건이 양호하고 공정한 수탁·위탁거래 관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평가된 기업에 대하여는 포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- 2) 상생법 시행규칙 제5조의2(수탁·위탁거래 우수기업의 선정 및 포상 등)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수탁·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포상 등을 할 수 있다.
1.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중 위탁거래액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
 2. 직전 사업연도의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어음대체결제의 방식으로 결제하였을 것
 3. 직전 사업연도 중에 법 제21조부터 제23조 및 제25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
 4. 제5조에 따른 표준약정서를 사용하였을 것

□ 신청대상

- 2013년도 수탁·위탁거래³⁾ 실적이 있는 기업⁴⁾

□ 선정요건(상생법 제5조의2)

- 아래의 ①, ②, ③, ④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

- ①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중 위탁거래액이 100분의 20이상일 것
- ② 직전 사업연도의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상생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어음대체결제^{*}의 방식으로 결제하였을 것
 - * 어음대체결제 방식 : 기업구매전용카드,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, 구매론 제도 등
- ③ 직전 사업연도 중에 상생법 제21조부터 제23조 및 제25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
- ④ 상생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표준약정서를 사용하였을 것
 - * 「수탁·위탁거래의 공정화 및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에 관한 운영세칙」(중기청 고시 제2011-8호) 제3조에 따라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3조의2 및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2조에 따른 표준(하도급)계약서 등 다른 약정서 또는 계약서를 사용하고 그 약정 또는 계약의 내용이 중기청이 고시한 표준약정서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상생법에 따른 표준약정서를 사용한 것으로 봄

* 관련규정 및 표준약정서(또는 표준하도급계약서)는 별도 첨부

-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공정위 홈페이지(www.ftc.go.kr)에서 다운로드 가능

□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내용

* 지원내용은 지원 신청년도의 관련 정책 및 규정 개정^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- 상생법 위반으로 부과된 벌점에 대하여 2점 경감(최초 1회)
- 2년간(확인일이 속한 연도 및 익년도) 정기 수탁·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
- 공공구매 시 중기 간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중 신인도점수(가점 1점)
- 신용평가기관(신보, 기보) 신용평가 시 우대
-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우대지원(가점 1점)
- 병역지정업체(산업기능요원) 추천 평가(가점 1점)

3) 수탁·위탁거래 : 제조, 공사, 가공, 수리, 판매, 용역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(위탁기업)이 물품, 부품, 반제품 및 원료 등(이하 “물품 등”)의 제조, 공사, 가공, 수리 또는 용역 또는 기술개발(이하 “제조”)을 다른 중소기업(수탁기업)에 위탁하고, 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

4) 신청 제외대상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

2

우수기업 선정절차·방법

□ 선정절차

일 정	내 용
'14.8.13~9.12 (관할 지방청·사무소)	선정공고 및 신청·접수
'14.9.15~9.30 (관할 지방청·사무소)	선정심사(서류 등 심사, 현장검증) 및 우수기업 선정 * 선정요건 충족여부에 대해 서류 및 현장 확인
~'14.9.30 (관할 지방청)	우수기업 확인서 발급 * 확인서 유효기간 : '14.10.1~'16.9.30
'14.10.1~'16.9.30 (중기청 및 지원기관)	우수기업 지원(유효기간)

□ 신청방법

- 접수기간 : 2014. 8. 13(수) ~ 9. 12(금)
- 제출서류 : ① 수탁·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신청서 1부
② 2013년도 거래 수탁기업 명단 1부
③ 2013년도 재무제표 증명원 1부
- 신청방법 : 본사(또는 주된 사업장)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(또는 지방사무소)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(마감당일 도착분 한함)
 - * 소재지 관할 지방청·지방사무소에서 신청·접수 가능하나, 최종선정 및 우수기업 확인서 발급은 관할 지방청 수행

5) **상생법 제40조(자료의 제출 등)** ①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·사업장 및 공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·서류,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1.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, 제24조의2 및 제25조에 따른 수탁·위탁거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경우

3

문의·접수처

지역	기관명	전화번호/팩스	주소
서울	서울지방중소기업청 (기업환경개선과)	02-2110-6343 F02-2110-0664	(☎427-700)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 청사 1동 1층
부산	부산·울산지방중소기업청 (기업환경개선과)	051-601-5133 F051-335-4335	(☎618-270) 부산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
울산	부산·울산지방중소기업청 (울산사무소 기업혁신지원팀)	052-283-0348 F052-283-0354	(☎683-804) 울산시 북구 산업로 915(울산경제진 흥원) 2층
대구 경북	대구·경북지방중소기업청 (기업환경개선과)	053-659-2262 F053-654-1714	(☎704-833) 대구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-11
광주 전남	광주·전남지방중소기업청 (기업환경개선과)	062-360-9136 F062-366-9662	(☎502-200) 광주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
경기 남부	경기지방중소기업청 (기업환경개선과)	031-201-6957 F031-201-6959	(☎443-761)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
경기 북부	경기지방중소기업청 (경기북부사무소 창업성장지원팀)	031-820-9010 F031-820-9019	(☎482-100)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섬유중 합지원센터 2층
인천	인천지방중소기업청 (기업환경개선팀)	032-450-1142 F032-818-0206	(☎405-849) 인천시 남동구 은봉로 82
대전	대전·충남지방중소기업청 (기업환경개선과)	042-865-6109 F042-865-6139	(☎305-343)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
충남	대전·충남지방중소기업청 (충남사무소 창업성장지원팀)	041-564-3857 F041-564-3855	(☎331-981)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(불당동 1418)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2층
강원	강원지방중소기업청 (기업환경개선팀)	033-260-1624 F033-260-1629	(☎200-944)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
충북	충북지방중소기업청 (기업환경개선팀)	043-230-5323 F043-235-2492	(☎363-883)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 로 48
전북	전북지방중소기업청 (기업환경개선팀)	063-210-6446 F063-210-6460	(☎560-860)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
경남	경남지방중소기업청 (기업환경개선팀)	055-268-2561 F055-262-5560	(☎641-060)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

- 붙임 1. 수탁·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신청서(양식) 1부
 2. 2013년도 거래 수탁기업 명단(양식) 1부
 3. 관련 규정 및 법적 준수사항(별첨) 1부
 4. 표준약정서(또는 표준하도급계약서)(별첨) 1부

<참고>

수탁·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확인신청서 작성요령

1) 「수탁·위탁거래」는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제조, 공사, 가공, 수리, 판매, 용역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(위탁기업)이 물품, 부품, 반제품 및 원료 등(이하 “물품등”)의 제조, 공사, 가공, 수리 또는 용역(이하 “제조”)을 다른 중소기업(수탁기업)에게 위탁하고, 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 거래를 말함

- **위탁기업(대기업, 중견기업, 중소기업)** : 제조, 공사, 가공, 수리, 판매, 용역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물품 등의 제조를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기업
- **수탁기업(중소기업)** : 위탁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으로서, 전문적으로 제조, 공사, 가공, 수리 또는 용역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기업



2) 「종업원수」는 귀 사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“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”상의 2013.12월말 월급여간이세율(A01)의 총인원(단, 1개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할 경우 각각의 상시고용종업원수는 합산)

3) 「수탁기업수」는 2013.1.1~2013.12.31까지 귀 사가 물품부품반제품 및 원료(이하 물품 등)의 제조·공사·가공·수리 또는 용역을 위탁하여 귀 사에 이를 납품한 거래기업수를 말함

4) 「연간 위탁거래금액」은 2013.1.1~2013.12.31까지 모든 위탁거래금액(세금계산서 합계표 상의 위탁거래)을 말하며, 현금결제금액(수표, L/C포함) + 어음결제금액 + 어음대체결제방식에 의한 결제금액을 합산한 금액임(단위 : 백만원)

※ 어음대체결제방식

- 기업구매전용카드 : 구매기업이 납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납품기업은 구매기업의 지급대행은행(카드사)으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는 결제방식
- 기업구매자금대출 : 구매기업이 납품대금을 거래은행으로부터 융자받아 납품기업에 현금으로 결제하는 방식
- 상환청구권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: 납품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받고 구매기업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 결제방식
- 구매론 :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구매론이라는 대출채권으로 결제하고 납품기업은 구매기업의 지급대행 금융기관으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는 결제방식
- 상환청구권이 없는 네트워크론 : 납품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구매기업의 발주서를 근거로 대출받고 구매기업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 결제방식

5) **연간 매출액 대비 위탁거래금액 비율** = $\frac{2013\text{년도 수탁기업에 위탁한 거래금액의 합계}}{2013\text{년도 매출액(부가세 신고액 등)}} \times 100$

- **거래금액** :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따른 거래금액(VAT포함)

【붙임2】

2013년도 거래 수탁기업 명단

번호	수탁기업명	대표자명	사업장 등록번호	거래금액(백만원)				납품거래 담당자명	담당자 전화번호	(우편번호) 주소	팩스번호	비고 (거래현황)
				현금	어음	어음대체	기타					

※ 수탁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만 해당되며, 수탁기업이 상호출자제한집단(기업집단정보포털(<http://groupopni.ftc.go.kr>)), 중견기업(중견기업포털(<http://highpotential-e.or.kr>)-중견기업통계-중견기업리스트), 관계기업(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<https://sminfo.smba.go.kr>)-중소기업확인), 비영리법인 등에 포함되는 경우 제외

※ 비고(거래현황)는 해당 수탁기업과의 거래의 지속성 등에 대해 기재(예시 : 1회 거래, 계속 거래, '08년부터 거래 등)